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1월 22일 / 포항시장

나. 회부일자 : 2026년 1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6. 2. 5.) 상정 . 질의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원한 여성가족과장)

가. 개정사유

- 포항시의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증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포항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안 제37조제3항)
- (현행) 2026년 6월 30일 → (개정안) 2031년 6월 30일”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를 연간 3명 이내로 선정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 수상대상자의 중복 수상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 신설(안 제46조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다. 관련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경희)

○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증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포항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종합검토 결과

-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2025년도말 조성액은 15억 6,846만 3천원이며 2026년 양성평등 기금 공모선정 사업에 2,200만원 지출하여 2026년도말 16억 8,709만 6천원 조성될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
- 또한, 제3항에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회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 ‘포항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안’은 2025년 11월 12일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회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포항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과 ‘포항시 양성평등상’에 대한 수정부분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법리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